

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I. 사건의 개요

전직 신문기자이자 인터넷언론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4월경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찍은 건 후회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OOO 유세차량에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부가 투기세력을 못 잡았다고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이”,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O정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언론사 B, C, D 3곳은 A씨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A씨의 과거 마약 전과를 적시하였다. B 언론사의 경우 3명의 기자가 각자 2021년 4월 3일 1건 및 4월 4일 2건, 총 3건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O정당 OOO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다”라며, 과거 A씨가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

A씨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실, 이후 A씨가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된 사실,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등을 기사화하였다.

언론사 C의 경우 2021년 4월 4일자 인터넷기사에서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체포된 후 해고된 전 일간지 기자가 최근 O정당 O시장 후보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을 향해 (중략) 저주를 퍼부었다”며 A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다니던 언론사에서 해고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사화하였다. 언론사 D 역시 같은 날 “필로폰 실형 A O언론 전 기자, SNS 막말”이라는 제목 하에 A씨의 마약 전과를 적시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A씨는 언론사 B, C, D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소속 기자 5명에게 기사삭제를 구하며, 여기에 더해 각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 별로 공동으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가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본인이 처벌받은 사실을 공론화하며 마약 퇴치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었다. 하지만 A씨의 마약 전과와 A씨가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청년들을 비판한 행위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해당 기사들을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평가해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II.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가.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언론사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가 과거 스스로 마약 전과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마약 전과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訴權)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 자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소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여 실체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 스스로 밝혔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기사화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지, 이에 따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가 되었다. 원고인 A씨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근거 규정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인데, 해당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인이 공개한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의 마약 관련 전과는 이미 대중들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정보 인데다가 A씨 스스로 공공연하게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해당 기사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A씨가 일간지 기자로 재직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여러 차례 기사화되었던 바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마약 퇴치운동을 하며 본인의 마약 전과를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공개한 범죄이력을 보도한 것이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20도5813 판결 등). 법원은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의 마약 전과를 보도한 것은 본인이 공개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 및 삭제 범위의 판단 기준

A씨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뿐 아니라 기사삭제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사삭제에 대한 명문 규정은 현행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사삭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기사삭제로 조정이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 대법원이 판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중략)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등). 위 판시에서 언급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기사삭제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위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의 기사삭제를 명하였다. 삭제 대상이 된 부분은 사실상 A씨의 마약 전과와 관련된 내용 전부였다. 법원은 언론사 B의 기사 중 A씨가 과거 모 신문사 기자로 재직하던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된 뒤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A씨가 당시 소속되었던 언론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된 사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삭제하라고 판단하였다.

언론사 C와 D에 대해서도 A씨의 과거 처벌전력과 관련한 기사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은 삭제를 명한 부분이 “보도의 전체 문맥이나 의미 구조상 필수적이라거나 나머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리하면, 법원은 현존하는 침해에 대한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에서 기사삭제의 법적 근거를 도출한 뒤 삭제의 범위를 판단할 때 ① 해당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② 기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③ 기사의 구조상 필수적인 내용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법원은 피고들의 언론 매체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A씨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각 5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양재규 (2022. 6. 9). 기사삭제청구권은 없어도 기사삭제는 있다. <반론보도닷컴>. URL: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5>



라. 마약 전과 내역을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A씨가 공적인 존재이고, A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어야 할지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씨의 전과를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피고들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므로 삭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의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하였다. 그 근거로 4가지 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A씨의 마약 전과 사실이 기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이나 본문에 적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테면 해당 기사들이, A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청년들 반응, 국회의원의 비판 의견을 보도하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느닷없이 A씨의 마약 전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또 언론사 B, C, D는 전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A씨의 마약 전과를 거론하였는데, “마약 해고된 前 기자”, “마약 투약 前 일간지 기자”, “필로폰 기자”, “필로폰 실형 모 언론 전 기자”라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둘째, 법원은 A씨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문제 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A씨의 마약 전과가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A씨의 마약 전과가 보도된다고 해서 A씨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는 것도 아니고, 마약 전과는 해당 기사들이 보도되기 3년 전 즈음 이미 확정돼 마약 전과를 보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셋째, A씨가 스스로 전과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그 목적은 마약 범죄 관련 수사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데 있었고, 넷째, A씨가 기자로서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마약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III.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법원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적대적인 사실관계나 대상에 대한 취재를 할 때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례평석에서 다른 기사들의 경우, 법원에서 책임을 지우는 데 신중을 기해 온 다른 기사들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들이 A씨가 올린 정치적 게시글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쓰면서 마약 전과를 거론한 데에는, A씨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그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재판 과정 중 ‘기사에서 마약 전과를 거론한 것은 게시글의 신빙성을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대로 A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마약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인이 밝힌 전과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과거 범죄이력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기사에서 불특정 독자들에게 ‘A는 마약 사범이다’라고 언급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특히 언론사로서는 이와 같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의 기사를 지양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실 적시, 특히 당사자가 공개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언론사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